

1. 개정이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타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인증에 합격한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20프로에서 40프로로 확대하는 한편 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가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과 소방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공인된 경우 시험생략 등”의 근거 마련(안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 1)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인증을 받았거나 국제적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경우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나.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안 제43조제6항)

- 1) 소방용품 제품검사의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함.

다. 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가간 신설(안 별표 18의2)

- 1) 신청수량 1,200개이상일 경우 10%이상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0이상 1,200미만 구간을 신설함.

라. 복수의 인증제품이 필요한 소방용품의 할인율 확대(안 제43조제6항)

- 1)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부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한 것일 경우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부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한 것일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의2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가. 검사주기 1개월: 10퍼센트

별표 9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1개월, 3개월”로, “6개월 또는”을 “1개월, 6개월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

신청수량	할인적용구간	수수료 할인 기준
1개 ~ 3,200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개 ~ 10,000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개 ~ 35,000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개 ~ 500,000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 ~ 500,000개	40%
500,001개 이상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 ~ 500,000개	40%
	500,001개 이상	50%

비고: 수수료의 할인은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예시) 단위당 수수료가 100원인 제품을 3,300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begin{aligned}
 & \{5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 \\
 & + \{(1,200-5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05)\} \\
 & + \{(3,200-1,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1)\} \\
 & + \{(3,300-3,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2)\} = 304,500\text{원}
 \end{aligned}$$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22조의2제2호 참조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품목	품목단위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 별도첨부 가능	
신청의 구분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첨부서류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 명	승인(인증)번호	
	형 식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품질제품검사 적용 연월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제품완성 예정일	신청수량	
	최초 출고 예정일		
합격표시의 방법	[] 증지 부착 [] 날인 또는 각인 [] 제품 직접 표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검사 합격표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합니다.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나. 품 명: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마.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바.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합격표시번호
[] 증지류	개	
[] 각인 및 날인류		
[] 제품에 직접 표시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생략)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부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한 것일 경우</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① (생략)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

1. · 2.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제43조(수수료)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

1. · 2. (현행과 같음)

3.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부품이 「산업표준화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한 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
격한 것일 경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수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1의2. -----

----- 50퍼센트 -----
-----.

2. -----

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
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신 설>

가. ~ 다. (생략)

3. (생략)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
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
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44조 ~ 제45조 (생략)

[별표 1] ~ [별표 8] (생략)

[illegible]

가. 검사주기 1개월: 10퍼센트

나. ~ 라. (현행 가목부터 다
목까지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4. _____

_____ 40퍼센트

트 _____

_____.

제44조 ~ 제45조 (현행과 같음)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별표 8] (현행과 같음)

[별표 9] 제품검사의 방법 등(제 21조제4항 관련)

1. 제품검사주기

가. (생 략)

나. 품질제품검사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1회씩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와 상관 없이 별도로 품질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2.·3. (생 략)

5. 그 밖에 제품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0] ~ [별표 18] (생 략)

[별표 18의2]

수수료 할인 기준

(제43조제6항제1호 관련)

신청수량	할인적용구간	수수료 할인 기준
1개 ~ 3,200개	<u>1 ~ 1,200개</u>	0%
	<u><신 설></u>	<u><신 설></u>
	1,201 ~ 3,200개	10%

[별표 9] 제품검사의 방법 등(제 21조제4항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개
월, 3개월 -----
----- 1개월, 6개월 --

-----.

1)·2)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4. -----

-----.

[별표 10] ~ [별표 18] (현행과 같음)

[별표 18의2]

수수료 할인 기준

(제43조제6항제1호 관련)

신청수량	할인적용구간	수수료 할인 기준
1개 ~ 3,200개	<u>1 ~ 500개</u>	0%
	<u>501개 ~ 1,200개</u>	<u>5%</u>
	1,201 ~ 3,200개	10%

3,201개 ~ 10,000개	1 ~ 1,200개	0%
	<신 설>	<신 설>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개 ~ 35,000개	1 ~ 1,200개	0%
	<신 설>	<신 설>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개 ~ 500,000 개	1 ~ 1,200개	0%
	<신 설>	<신 설>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 ~ 500,000개	40%
500,001 개 이상	1 ~ 1,200개	0%
	<신 설>	<신 설>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 ~ 500,000개	40%
	500,001개 이상	50%

비고: 수수료의 할인은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예시) 단위당 수수료가 100원인 제품을 3,300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1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
 $+ \{(3,200-1,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1)\}$
 $+ \{(3,300-3,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2)\}$
=308,000원

[별표 19] (생 략)

3,201개 ~ 10,000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개 ~ 35,000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개 ~ 500,000 개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 ~ 500,000개	40%
500,001 개 이상	1 ~ 500개	0%
	501개 ~ 1,200개	5%
	1,201 ~ 3,200개	10%
	3,201 ~ 10,000개	20%
	10,001 ~ 35,000개	30%
	35,001 ~ 500,000개	40%
	500,001개 이상	50%

비고: 수수료의 할인은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예시) 단위당 수수료가 100원인 제품을 3,300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5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
 $+ \{(1,200-5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05)\}$
 $+ \{(3,200-1,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1)\}$
 $+ \{(3,300-3,200)\text{개} \times 100\text{원} \times (1-0.2)\}$
=304,500원

[별표 19] (현행과 같음)